

복무 중 학점인정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 학칙 제31조의2(학점인정) 군복무 중 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1. “군복무 중 학점인정”이란 루터대학교 재학생 중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입대휴학 중인 자(이하 “군 휴학자”라 한다)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루터대학교에서 개설한 “군 이러닝 강좌”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군 이러닝 강좌”란 군 휴학자가 입영 또는 복무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도록 루터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개설된 강좌를 말한다.

제3조(수강학기 및 교과목) 수강학기는 본교 정규학기로 한다.

제4조(수강료) 본교 이러닝에 의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계절학기에 준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, 국방부 군 이러닝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성적) ① 성적평가는 해당 교과목의 재학생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
② 군휴학자가 취득한 성적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며 누계평점평균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.

제6조(학점인정) ① 군복무 중 취득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, 연간 6학점 이내로 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② 본교 이러닝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재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정한다.

③ 학점인정은 군복무 후 최초 복학한 학기의 직전학기 계절학기 성적으로 한다.

④ 최초 복학학기의 지정된 기간 내에 교학처가 정한 양식에 따라 “학점인정 신청서”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준용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군복무 중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내규, 관련법규를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